

추가약정서

(생활안정자금 주택담보대출 추가약정용)

주식회사 하나은행 앞

20 년 월 일

채 무 자 : _____ (인)

주 소 : _____

채무자는 주식회사 하나은행(이하 “은행”이라 합니다.)과 약정한 20 년 월 일자 대출거래약정서(가계용)에 추가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합니다.

제 1조 (목적)

이 약정서는 **주택구입 목적이 아닌 의료비, 교육비 등 생활안정자금 목적**으로 대출거래를 하기 위한 약정입니다.

제 2조 (기 보유 주택)

채무자가 속한 세대^{주1)}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**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**(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 등 포함)은 다음과 같습니다.

주1) “세대”라 함은 세대주 및 세대원으로 구성되며, 세대원은 세대별 주민등록표(「출입국관리법」에 따른 외국인 및「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외국국적동포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포함)상에 배우자, 직계존속(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),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를 말하며, 세대분리된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를 포함합니다.

① 담보로 제공하는 주택

종류	소유자	주소

② 보유 중인 주택 등

종류	소유자	주소



제 3조 (주택 등의 추가 구입 금지의무 등)

① 채무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은 본 대출 실행일부터 전액 상환 전까지 제 2조 제2항에 명시된 주택 등 외에 **추가로 주택 등을 구입^{주2)}하지 않습니다.**

주2) 매매, 증여, 상속 등에 따른 소유권 취득. 다만 상속에 의한 취득은 제외, 이하 같음

② 채무자는 본 대출 전액 상환 전까지 **세대주 또는 세대원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지체없이** 그 변경내용을 **은행에 신고하여야 합니다.**

제 4조 (증빙자료)

대출금액이 2억원을 초과할 경우 채무자는 자금 용도 관련 증빙자료를 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.

제 5조 (기한전의 채무변제 의무)

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(가계용) 제 7조 제 4항 제 2호에 의하여 본 대출의 **기한의 이익은 상실**하게 되고, 그에 따라 **본 대출을 즉시 변제할 의무**를 집니다.

1. 채무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본 대출 실행일로부터 **전액 상환전까지** 제 2조 제2항에 명시된 주택 등 외에 **추가로 주택(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 등 포함)을 구입한 경우**

2. 채무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대출실행일 기준으로 **제 2조에 명시되지 않은 주택(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 등 포함)을 보유^{주3)}**하고 있는 경우

주3) 다만 대출신청일 이후 상속에 의한 취득은 제외

3. **채무자가 제출한 자금 용도 관련 자료가 사실이 아닌 경우**

제 6조 (여신거래 약정위반)

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**본 대출 완제여부에 관계없이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자의 약정 위반사실이 제공되며, 제공일로부터 향후 3년간 금융기관^{주4)}의 주택 관련 대출^{주5)}이 제한됩니다.**

주4)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항 제 1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

주5) 「은행업감독규정」<별표6> 제1호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 등

1. 채무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본 대출 실행일로부터 **전액 상환 전에** 제 2조 제2항에 명시된 주택 등 외에 **추가로 주택(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 등 포함)을 구입한 경우**

이 계약서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.

